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-6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0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민자치회
확대를 통해 주민주도의 참여의식 고양 및 주민자치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
주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확대 (안 제3조)
- 나. 주민자치회 정원 수정 (안 제5조)
- 다.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(안 제6조, 제8조)
- 라. 동행정과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구체화 (안 제6조, 제8조, 제20조)
- 마. 주민자치위원의 의무 강화 및 연임 규정 구체화 (안 제9조, 제11~12조)
- 바.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리·감독 조항 신설 (안 제22조)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~제29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0. 5. 1. ~ 5. 15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5) 제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0.5.1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**한다**)은”을 “**한다**)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”로, “**주민자치회를**”을 “**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**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“법”**”을 “**“특별법”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**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**”을 “**위한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, 주민총회 개최 등의**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정원) 위원 정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**투명**”을 “**주민자치회 최초 구성 시 투명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5명으로 하며**”를 “**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**”로, “**호에 따라**”를 “**호의 사람 중에서**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**3명**”을 “**2명 이내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**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**”를 “**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**”로 한다.

1. 주민자치·마을사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이내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주민자치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본문 중 “**5명**”을 “**10명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**위원이 될 사람은**”을 “**위원 추천 시**”로, “**양도록 하며**”를 “**양도록**”으로, “**추첨**”을 “**노력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**위촉한다**”를 “**위촉하고,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**

보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”를 “주민자치회 최초 구성 이후 위원 위촉 시”로, “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하여”를 “없으면 주민자치회에서 공개추첨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항에 따라 공개추첨을 통해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다만,”을 “다만, 결원으로 인한 위원 위촉 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구청장”을 “동장”으로 한다.

⑥ 제5항에 따른 공개추첨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하되, 동장을 포함하여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“하고,”를 “하고, 제11조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추첨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, 제1항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 중 “1곳 이상 참여하며”를 “소속되어야 하며”로, “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”를 “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연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,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조의2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정치적 중립의무)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제7호에

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제13조(중전의 제12조)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11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
제13조 앞에 “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”을 삭제한다.

제14조 앞에 “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”을 삽입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하고,”를 “하고,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”를 “간사를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(문서작성, 회계처리 등의 실무 포함)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민총회는”을 “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행정사무 평가”를 “행정사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개최하고”를 “이상 개최하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구청장 및 동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검토 및 반영 여부”를 “동장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결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21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제12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이를 관리·감독할 수 있다.

제23조제2항 중 “구청장은”을 “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,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9조, 제1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3조(주민자치위원회 해산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 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설치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관할 지역의 동에 <u>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조(기능) 주민자치회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28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조례」 제15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<u>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제5조(정원) <u>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제6조(위원선정위원회) ①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 라고 한다)</p>	<p>제3조(설치) ① ----- ----- 한다)은 <u>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</u> ----- ----- <u>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“특별법”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위한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, 주민총회 개최 등의</u> 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정원) <u>위원 정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.</u></p> <p>제6조(위원선정위원회) ① <u>주민자치회 최초 구성 시 투명</u>----- ----- -----.</p>

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구청장은 제3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.

⑤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,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하여 위원을 위촉한다. 다만,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.

<신설>

⑥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⑦·⑧ (생략)
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위촉하고,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----- 주민자치회 최초 구성 이후 위원 위촉 시 -----
----- 없으면 주민자치회에서 공개추첨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항에 따라 공개추첨을 통해 ---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위원 위촉 시 -----
-----.

⑥ 제5항에 따른 공개추첨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하되, 동장을 포함하여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⑦ 동장-----

-----.

⑧·⑨ (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)

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
----- 하고, 제11조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추첨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---. <단서 삭제>

다.

<신 설>

제11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,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하며,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12조(위원의 해촉) ① (생략)

②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, 제1항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의 의무) ① -----

----- 소속되어야 하며-----
----- 관련하여
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-----.

②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연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,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정치적 중립의무)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제13조(위원의 해촉) ① (현행과

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③ (생략)

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

제13조 (생략)

<신설>

제14조(주민자치회의 장) ①·② (생략)

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16조(간사)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19조(주민총회)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.

1. (생략)

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11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1조의2 (현행 제13조와 같음)

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

제14조(주민자치회의 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하고, 주민자치회의 결
을 거쳐 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간사) ① -----
--- 간사를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(문서작성, 회계처리 등의 실무 포함)-----
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주민총회)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동 행정사무 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

3. ~ 5. (생략)

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,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③ ~ ⑤ (생략)

<신설>

제20조(자치계획의 수립·결정 및 효력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·지원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.

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

2. -- 행정사무-----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이상 개최
하며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자치계획의 수립·결정 및 효력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구청장 및 동장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동장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결과-----.

<삭제>

때까지 효력을 갖는다.

제21조(자치계획의 구성)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.

1. (생략)
2. 동 행정사무 평가 내용에 대한 협의 계획

3. ~ 7. (생략)

제22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① ~ ④ (생략)

<신설>

제23조(관계기관 등과의 협조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, 이와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.

<신설>

제21조(자치계획의 구성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3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4항에 따라 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제12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이를 관리·감독할 수 있다.

제23조(관계기관 등과의 협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.

제26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26조 (생략)

제27조 (현행 제26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10조(위원의 대우)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간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제10조에 따른 예상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

4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김미자 (☎ 3153-8312)